

실내공기질 측정



쾌적한 실내공기질은 건강증진의 필수요소입니다.

국내 최고의 산업보건 전문가와 최첨단 설비의 만남,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가장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문의 • 서울지역본부 02)3284-5232~5 • 광주전남북지역본부 062)519-2344
• 전북산업보건센터 063)239-4030 • 대전충남북지역본부 042)281-7673~5

실내 환경 측정

실시근거

-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 (교육부) 「학교보건법」 제4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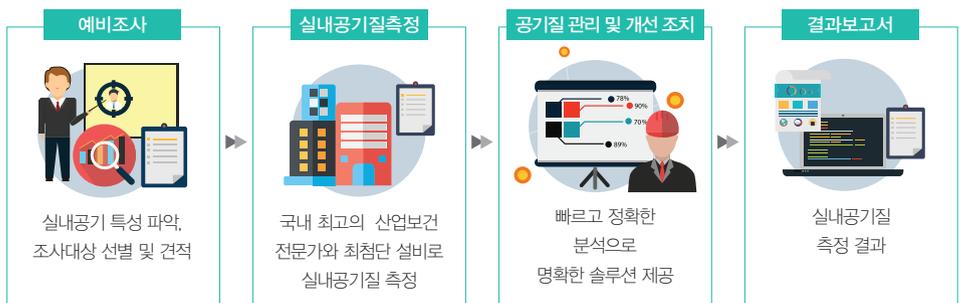
사업개요

새집증후군, 빌딩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 실내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주기

법령	대상	주기	과태료
실내공기질관리법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횡단시설, 공항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 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실내주차장, 업무시설, 실내공연장, 실내체육관, 목욕장 등	유지기준: 1년에 한번 권고기준: 2년에 한번	미 실시 500만원 이하
	신축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입주 7일전까지	
학교보건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연 1회이상 (권고)	-

조사 절차 및 방법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

구분	항목	측정시기
유지기준 오염물질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PM2.5	연 1회 측정
권고기준 오염물질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부유곰팡이	2년마다 1회 측정
신축 공동주택	폼알데하이드, 스티렌, 자일렌, 에틸벤젠, 톨루엔, 벤젠, 라돈	입주 7일전까지

적용대상

1. 지하역사(출입동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동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12의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공동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 대중교통차량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학교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근거

이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오염여부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점검항목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

구분	점검항목	중점점검 시기	연간점검 횟수	비고
1	환기	동절기	1회 이상	
2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동절기	1회 이상	
3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4	소음	하절기	1회 이상	
5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연중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5-1	미세먼지(PM10 및 PM2.5)	-	-	교사,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
5-2	이산화탄소(CO2)	-	-	교사, 급식시설
5-3	폼알데하이드(HCHO)	-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및 급식시설
5-4	총부유세균	-	-	교사, 급식시설
5-5	낙하세균	-	-	보건실, 급식시설
5-6	일산화탄소(CO)	-	-	
5-7	이산화질소(NO2)	-	-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
5-8	라돈(Rn)	-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	신축(중·개축)후 3년 이내
5-10	석면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실
5-11	오존(O3)	-	-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	-	보건실
5-13	벤젠	-	-	
5-14	톨루엔	-	-	
5-15	에틸벤젠	-	-	
5-16	자일렌	-	-	
5-17	스티렌	-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6	폐기물	하절기	2회 이상	
7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하절기	2회 이상	
8	먹는 물	계절별	4회 이상	
9	상수도 및 하수도	하절기	1회 이상	
10	화장실	하절기	4회 이상	
11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하절기	4회 이상	

비고 :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가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는 1층 교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주기를 3년으로 할 수 있다.